



의사의 설명의무 범위



김낙의
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

의사 기타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므로 그 위법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승낙이 필요하다.

이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승낙은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제로 한 자기결정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, 충분한 정보 제공은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시작된다.

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,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 대상이 된다(대판 . 10. 28. 2002다 45185).

즉 의사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하여 까지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.

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양수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의사가 그 전에 양수색전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. 즉, 양수색전증은 분만 전후 나타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으로 예방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이며,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하였다.

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전후에 걸쳐 전반적으로 설명의무가 있으나 개별적인 병명과 증상, 그 예측가능성에 따라 다소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.